

보도참고자료

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
AND FINANCE

보도일시	2011. 3. 24(목) 배포시		
배포일시	2011. 3. 24(목) 15:00	담당부서	국고국 국유재산과
담당과장	신 봉 일 과장(2150-5150) 고 종 안 팀장(2150-5250)	담당자	이병두 사무관(2150-5257)

제 목: 새로운 국유재산 관리제도, 국민과 더 가까워진다.

-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개정안 및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정안이 3.24일(목)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음
 - 동 시행령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「국유재산법」 개정안 및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」 제정안이 지난 3.1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, 그 위임사항 및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
- 이번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은 서민생활의 고충을 덜어 주고 국유재산 관리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였음
 - ①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확충,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 및 종교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, 국유재산의 사용료 요율을 현행 5%에서 각각 3%(소상공인), 2.5%(사회복지사업, 종교단체)로 인하하였음
 - * 국유재산 연간사용료 = 재산가액(감정가 or 공시지가) × 해당 요율
 - ② 국유재산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연간대부료(임대료) 일시납부 제도 외에 시장의 전세(專賃) 제도와 유사한 대부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하였음(2012년부터 시행)
 - * 대부보증금 = 연간대부료 ÷ 고시이자율

□ 아울러,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한 국민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었던 국세물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

- 상속세·증여세를 현금 대신 비상장 증권으로 물납한 본인은 국세 물납한 가격 이하로는 다시 매수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음

* 총 매각 건 중 본인 매수 비중은 약 20%이며, 환가율은 물납가 대비 약 55% 수준

□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」에는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·평가 결과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음

-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국유재산특례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례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됨

- 향후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특례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·평가를 통해 국유재산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관리·감독을 강화할 계획임

* 국유재산특례(양여·무상사용·장기사용)는 현재 169개 법률에서 195개의 특례가 존치중

□ 기획재정부는 동 시행령 제·개정안에 대하여 국무회의 심의(3.29일 예정)를 거쳐 법 시행일에 맞춰 4.1일 공포·시행할 계획임

<붙임>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정안
주요내용

기획재정부 대변인